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신청자격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	---	-------------

우대사항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등 참여 등
------	---

사업계획	① 단축 시행일(00년 00월 00일) ② 지원 필요성 및 지속 방안 ※ 지원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견기업확인서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5.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월별 임금대장 7. 1~6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결재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계획서

1. 단축 시행 전

구분	시행 전 3개월 실근로시간			계(④)	월 평균 실근로시간(⑤)
	00.0월	00.0월	00.0월		
총 근로시간(①)					
피보험자수(②)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③=①/②)				④=③의 합계	⑤=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⑥=⑤/4.3주)	
작성방법	① 총 근로시간: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월별 실근로시간 합계 ② 피보험자수: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중인 월별 피보험자수 ③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① ÷ ②, 소수점 이하 버림 ④ 1인당 월별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⑤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⑤/4.3주				

2. 단축 시행 후

구분	시행 후 3개월 실근로시간			계(㉔)	월 평균 실근로시간(㉕)
	00.0월	00.0월	00.0월		
총 근로시간(㉑)					
피보험자수(㉒)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㉓=㉑/㉒)				㉔=㉓의 합계	㉕=㉔/3개월
㉖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㉖=㉕/4.3주)	
작성방법	㉑ 총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월별 실근로시간 합계 ㉒ 피보험자수: 단축 시행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인 월별 피보험자수 ㉓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㉑ ÷ ㉒, 소수점 이하 버림 ㉔ 1인당 월별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㉕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㉔/3개월 ㉖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㉕/4.3주				

3.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수 (지원 대상 인원수)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㉙)	단축 시행 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㉚)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㉙-㉚)

사업주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형업종:56211, 무도유형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단축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는 노사누리(근로감독업무시스템) 전산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등 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2쪽)

1. 단축 시행 전

구분	시행 전 3개월 실근로시간			계(④)	월 평균 실근로시간(⑤)
	00.0월	00.0월	00.0월		
총 근로시간(①)					
피보험자수(②)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③=①/②)				④=③의 합계	⑤=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⑥=⑤/4.3주)	
작성방법	① 총 근로시간: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월별 실근로시간 합계				
	② 피보험자수: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중인 월별 피보험자수				
	③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① ÷ ②, 소수점 이하 버림				
	④ 1인당 월별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⑤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④/3개월				
	⑥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⑤/4.3주				

2. 단축 시행 후

구분	시행 후 3개월 실근로시간			계(㉔)	월 평균 실근로시간(㉕)
	00.0월	00.0월	00.0월		
총 근로시간(㉑)					
피보험자수(㉒)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㉓=㉑/㉒)				㉔=㉓의 합계	㉕=㉔/3개월
㉖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㉖=㉕/4.3주)	
작성방법	㉑ 총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월별 실근로시간 합계				
	㉒ 피보험자수: 단축 시행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인 월별 피보험자수				
	㉓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㉑ ÷ ㉒, 소수점 이하 버림				
	㉔ 1인당 월별 평균 실근로시간의 합계				
	㉕ 1인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㉔/3개월				
	㉖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㉕/4.3주				

3.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수 (지원 대상 인원수)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⑥)	단축 시행 후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㉖)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⑥-㉖)

사업주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통업종:56211, 무도유통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관리는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단축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는 노사누리(근로감독업무시스템) 전산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등 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별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는 1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4쪽 중 4쪽)

기업 소개	* 기업 연혁, 주요 사업 등 간단한 기업 소개
근로 현황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
단축 계획	① 단축 목표 시간: 주 평균 <input type="checkbox"/> 시간 단축 ② 단축 계획 시행일 : 2024년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일
구체적인 단축 방법	*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 시간제, 시차출 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활용 계획,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안, 연차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단축 계획 작성
선정 필요성 및 지속 방법	* 지역·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기업의 동 사업 선정 필요성과 장려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방향 등 기재